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9
------------	-----

2023. 11. 24.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11. 3. 김광심 의원 등 12명

나. 상정의결

-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3. 11. 24.)
“수정가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 대표발의자 김광심 의원)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강남구의회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함(안 제13조 및 별표4)
-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 5일을 신설하고,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다.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5일의
경조사 휴가를 주도록 함(안 별표 3)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의7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해당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구경남)

- 본 안건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특별휴가를 확대·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김광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임.
- 「지방공무원법」 제59조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 제6조²⁾에서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고 있고 영 제7조 및 제7조의7에서는 연가 및 특별휴가를 규정하고 있음.
- 한편, 2023. 7. 18. 공포되고 2023. 10. 19. 시행된 영 제7조제1항의 개정 사항은 다음 표와 같음.

1)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휴가의 종류)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이하 생략)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23. 10. 19.] [대통령령 제33639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u>2년 미만</u> 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u>2년 미만</u> 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u>2일</u> 을 더한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u>5년 미만</u> 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u>5년 미만</u> 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u>3일</u> 을 더한다.

- 개정된 복무규정에 따라 연가일수가 재직기간이 기존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연가일수는 2일에서 3일로 확대되었음.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조문의 띄어쓰기를 바로 잡으려는 것으로 보이고
- 안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에서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2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다만, 별표는 번호순서에 따라 부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3조는 별표 4로, 제15조제1항의 별표 3으로 규정되어 입법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바 제13조의 규정은 별표 3으로, 제15조제1항의 규정은 별표 4로 수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5조(특별휴가)제2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1. 1. 12. 제정되고 2021. 7. 13.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이 2021. 7. 13. 폐지되어 변경된 법적근거를 조례에 반영한 것임.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재직기간을 10년, 20년, 30년 이상 단위로 특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도 5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임. 서울시 및 타 자치구의 <사례>³⁾를 참고하여 재직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해 보임. 신설되는 제9항의 규정은 본인 생일이 있는 월에 1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로 2017. 8.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심사되었으나 서울시(행정국)는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은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되지 못한 사례가 있으나 송파구, 금천구 등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사례>⁴⁾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바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3) <사례>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특별휴가) ⑪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5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사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특별휴가) ⑭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4) <사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특별휴가) ⑰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9.5.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특별휴가) ⑧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2.12.30.>

- 안 별표 3은 제15조제1항5)에 근거한 것으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2항6)에 따른 별표 1 출산란의 배우자대상 휴가일수를 조례 별표 3에 그대로 중복기재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이미 법령으로 규정한 사항을 다시 조례에 재기재하는 것은 입법체계, 법령입안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됨. 또한 별표 3의 제목도 법령과 같은 형식인 <예시>7)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비 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5조 관련) 일부 발췌

출산	배우자	10일	⇒	출산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일 (15일)
	—	—			—	—

5)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7) <예시>

경조사 휴가일수표(제15조 관련)

- 안 별표 4는 제13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령의 개정사항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방법 중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를 법령의 개정예에 따라 ‘2일’에서 ‘3일’로 변경하는 것임. 다만, 별표 4의 제목도 <예시>⁸⁾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입법형식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 안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법령규정과 조례규정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시행일을 상호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따라서 제13조 규정은 이미 2023. 10. 19. 시행되고 있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조례에 근거한 제15조제4항 및 제9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 공포 이전의 직원들과 형평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바 <예시>⁹⁾와 같이 부칙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참고로 집행부가 제출한 <사례>¹⁰⁾에서도 2024. 1. 1.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로 특별휴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제13조의 별표 4, 제15조의 별표 3으로 규정되어 입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법령의 규정사항 일부를 조례에 중복기재함으로써 구분이 어려운 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¹¹⁾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지

8) <예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방법(제13조 관련)

9) <예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사례> 제315회 제2차 정례회(2023.11.3)에 집행부가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않는 사항만 조례로 규정하도록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입법형식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첨부자료 참고>